

[별표 1] <신설 2011.10.24>

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(제4조의2 관련)

구분	세부사항
보전산지의 이용 기준	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가. 2만㎡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·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(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상 관할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%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·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나. 산불발생,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,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입목축적을 조사·작성한 시점까지의 성장율을 반영해야 한다.

※ 비고

1.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
가.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2,000㎡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.

나.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(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6cm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.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cm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cm 괄약(括約)조사 방법을 적용한다.

다. 수고(樹高)는 나무 종류별·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.

라.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.

1) 전수조사의 경우: 입목축적 = 입목간재적표(立木幹材積表)상의 단목재적(單木材積) ×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

2) 표준지조사의 경우: 임목축적 = 표준지 재적합계 × (산지에서의 지역등의
협의 신청면적/표준지 총 면적)

라. 표준지는 그 임상(산림 모습을 말한다)이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신청하려는 산지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지역에서 선정한다.

마. 가목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, 전체 표준지를
합산한 면적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신청하려는 면적의 5% 이상이어야 한다.

1) 1개 표준지의 면적: 수평투영면적(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
말한다) 400m² 이상

2) 표준지의 개수

가)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m² 미만인 경우: 5개 이상

나)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m² 이상 10만m² 미만인 경우: 10개 이상

다)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만m² 이상 20만m² 미만인 경우: 15개 이상

라)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만m² 이상인 경우 : 20개 이상